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2175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의자 : 위성곤 · 채현일 · 임호선

김윤 · 최혁진 · 장철민

문대림 · 정진욱 · 고민정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에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고 유통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와 정책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 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 보관 · 판매 · 회수 ·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정책적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경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4항 단서 신설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한도 또는 환전대행 가맹점에 대한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제6항 신설 등).

다. 가맹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및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의5제1항).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등에 이 법에 따른 지원 중단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26조의6).

마.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6조의6제4항제2호 신설).

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9 신설 등).

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6조의10 신설 등).

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11 신설 등).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 업무를 한 자 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차.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한 자 또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 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 신설).

타.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제2호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 받는 자를 말한다.

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중 “등록”을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별가맹점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은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의5의 제목 중 “가맹점”을 “가맹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거절”을 “거절(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지자”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3. 환전대행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의5”를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으로, “1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을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6조의4제5항”을 “제26조의4제7항”으로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26조의9부터 제2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9(부당이득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① 판매대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법률 제2098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 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의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3.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4.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

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u>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u> <u>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u> <u>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u> <u>받는 자를 말한다.</u> 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 를 위탁받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 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신설>

<신설>

<신설>

⑤ · ⑥ (생략)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 다만, 개별가맹점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은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① -----

-----.

1. ----- 거절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부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
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
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 나.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
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
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

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사
용자-----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
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
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
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② -----

-사용자-----

| | |
|--|---|
| <p>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u>3년</u>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가맹점 <u>등록</u>을 한 경우</p> | <p>----- ----- ----.</p> <p>③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환전대행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u></p> <p><u>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u>5년</u>----- ----- -----. ----- ----- ----- ----.</p> <p>1. ----- -----<u>등록 또는 등록갱신</u>-----</p> |
|--|---|

| | |
|---|--|
| <p>2. (생 략)</p> <p>3. <u>제26조의5</u>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p> | <p>2. (현행과 같음)</p> <p>3. <u>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u></p> |
| <p>② (생 략)</p> <p>③ <u>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u>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u>1년</u>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p> |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u></p> |
|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p> <p>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p> | <p><u>5년</u></p> <p>-----.</p> |
| <p>2. <u>제26조의4제5항</u>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p> <p>3. (생 략)</p> <p>⑤ • ⑥ (생 략)</p> <p><u><신 설></u></p> | <p>④ -----.</p> <p>-----.</p> <p>-----.</p> <p>1. -----<u>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u></p> <p>2. <u>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u></p> <p>3. <u>제26조의4제7항</u></p> |
|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 6. (현행과 같음)</p> <p><u>제26조의9(부당이득의 환수) ①</u></p> <p><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u></p> | |

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① 판매대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신 설>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제70조의2(포상금)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

| | |
|--|--|
| <p><u><신 설></u></p> | <p><u>상품권의 보관 · 판매 · 회수 ·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u> <u>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u> <u>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u> <u>자</u></p> |
| <p><u>3. (생 략)</u> <u>② (생 략)</u> 법률 제2098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p> | <p><u>5. (현행 제3호와 같음)</u> <u>② (현행과 같음)</u> 법률 제2098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p> |
| <p>제72조(별 칙) ① (생 략) <u><신 설></u></p> | <p>제72조(별 칙)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u> <u>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u> <u>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u>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
| <p><u>② (생 략)</u>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 <p>제74조(과태료) ① ----- ----- ----- -----.</p> |
| <p><u>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u> <u>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u> <u>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u> <u>을 요청한 개별가맹점</u></p> | <p><u><삭 제></u> <u>1의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u> <u>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u> <u>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u></p> |
| <p><u><신 설></u></p> | |

| | |
|---|--|
| | <p><u>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u></p> <p>2. (현행과 같음)</p> <p>3.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p> <p>4.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p>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 |
| <p>1. (생략)</p> <p><u><신설></u></p> | |
| <p>2. (생략)</p> <p>③ (생략)</p> | |